

위원회 등 실비변상 규정

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 위원회 등 실비변상 규정

제정 2015. 09. 22.

개정 2021. 11. 19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(이하“장애인체육회”라 한다)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 이사 및 감사의 수당과 여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수당”이란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·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 지급하는 댓가를 말한다.
2. “여비”란 근무지 또는 거주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·숙박비·식비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) 이 규정은 장애인체육회 이사, 감사, 및 법령, 규약 또는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(이하 “실비변상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, 규약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4조(수당 등) ① 장애인체육회 소속 직원이 아닌 이사, 감사 및 위원이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장애인체육회 소속 직원이 아닌 이사, 감사 및 위원이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고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별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장(이하 “회장”이라 한다)이 개최하는 공식회의에 참석하는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 및 읍·면·동 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 참석수당은 기본료 7만원을 지급하고 2시간을 초과할 경우 3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여비) 장애인체육회 이사, 감사 및 위원이 회장의 명령,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체육회 여비규정 팀장 직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1. 19.>

보 칙

제1조(규정 이외의 사항) 위원과 실비변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15. 9. 22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 11. 19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